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 . . . (제 회)	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성환 (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률에서 규정한 환각물질 정보의 표시·광고 및 게시에 대한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,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조사 방법 등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적인 운영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환각물질 표시·광고 등에 관한 조사 등) ① 기후에너지환경
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환각물질 관련 법 제22조제3항 위반
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할 수 있다. 다만, 신고 또는 제보 등으로
법 제22조제3항 위반이 의심되는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시로 조
사할 수 있다.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
여 필요한 인력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
행정기관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통신판매업자·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협회·단체에 위반이 의심되는
정보에 대한 확인,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
다.

제22조제1항제8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를 제12호로 하며, 같
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
제5호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의2를 제5호

의2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제4호의2 및 제4호의3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,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22에 따른 환각물질 관련 위반 여부의 조사 및 그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등

6. 법 제28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에 대한 확인·인증의 이행여부의 조사 등

7. 법 제29조의2에 따른 판매자의 고지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의 조사 등

제22조제1항제7호, 제7호의2, 제9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, 제10호의2, 제12호의2 및 제13호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1호의2를 제11호의3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의2. 법 제29조의2에 따른 판매자의 고지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의 점검 등

부 칙

이 영은 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11조의2(환각물질 표시·광고 등에 관한 조사 등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환각물질 관련 법 제22조제3항 위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할 수 있다. 다만, 신고 또는 제보 등으로 법 제22조제3항 위반이 의심되는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통신판매업자·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협회·단체에 위반이 의심되는 정보에 대한 확인,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22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</p>	<p>제22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</p>

탁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.

1. ~ 2의9. (생략)

<신설>

3. ~ 4의2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5.·6. (생략)

7. ~ 8. (생략)

9. ~ 10. (생략)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

탁) ① -----

-----.

1. ~ 2의9. (현행과 같음)

3. 법 제22에 따른 환각물질 관련 위반 여부의 조사 및 그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등

4. ~ 5의2. (현행 제3호부터 제4호의2까지와 같음)

6. 법 제28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에 대한 확인·인증의 이행여부의 조사 등

7. 법 제29조의2에 따른 판매자의 고지의무에 대한 이행여부의 조사 등

8.·9. (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)

10. ~ 11. (현행 제7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)

12. ~ 13. (현행 제9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)

② -----

지방환경청장(이하 “지방환경
관서의 장”이라 한다)에게 위임
한다.

1. ~ 11. (생략)

<신설>

11의2. (생략)

12. ~ 25. (생략)

③·④ (생략)

----.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11의2. 법 제29조의2에 따른 판
매자의 고지의무에 대한 이행
여부의 점검 등

11의3. (현행 제11호의2와 같음)

12. ~ 25.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832